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17 선고 2021나2320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8. 17 선고 2021나23208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16 선고 2015가소53081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[변경 전 성명: C]

변론종결 2022. 5. 11.

판결선고 2022. 8. 17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16. 선고 2015가소53081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56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제1심판결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아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고 2021. 4. 6.에야 직접 법원을 찾아가 기록을 열람한 후 판결문을 수령하였는바, 피고로서는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.

나. 판단

1) 소장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,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. 여기에서 '사유가 없어진 때'란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고,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8다222228 판결 등 참조).

2)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6. 6. 16.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,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, 피고가 2021. 1. 15.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간 사실,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21. 4. 9.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

3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2021. 1. 15.경 제1심판결등본을 영수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임에도 그로부터 2주가 훨씬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. 그런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.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.

2. 결론

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재영, 판사 홍석현, 판사 최지아